

수입농약 등의 허가기준(제21조의2제3항 관련)

1.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 농약 또는 원제(법 제17조제4항제1호)의 수입 허가 기준
 - 가.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된 농약이 아니어야 함.
 - 나.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한 농약 및 원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.
 - 다. 국제기구, 외국정부, 유럽연합(EU)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판명된 농약 및 원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.
 - 라.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천연식물보호제 또는 그 원제의 경우에는 농작물·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위험평가를 통해 국내 도입에 문제가 없어야 함.
 - 마. 연간 수입량은 100kg(L)을 초과할 수 없음.
2.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나 생리기능 증진·억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(법 제17조제4항제2호)의 수입 허가 기준
 - 가. 제1호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과 동일함
 - 나.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나 생리기능 증진·억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.
 - 다. 해당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이 내수용으로 전환되어 사용될 경우에 대한 타당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.
 - 라. 국내에 이미 등록된 농약으로는 해당 농산물의 수출용으로 이를 대체할 만한 농약이 없다고 인정될 것.
 - 마. 그 밖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농약의 수입·판매·사용 과정 상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.
3. 「식물방역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(법 제17조제4항제3호)의 수입 허가 기준
 - 가. 제1호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과 동일함
 - 나. 「식물방역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.
 - 다. 국내에 이미 등록된 농약의 적절한 시기에 공급 가능 여부, 충분한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만한 농약이 없다고 인정될 것.
 - 라. 그 밖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농약의 수입·판매·사용 과정 상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.